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위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례 관련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 또한, 퇴직급여, 각종 재해보상 등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공제되기 전(소위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한편, 주로 **보건의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소위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 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이** 있어온 바,
 - * 네트제 계약: ①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②그에 따라 근로자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③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는 계약방식
 - 이러한 근로계약 형태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들어 소위 '네트제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부에 **다음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 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임에도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경우**
 - 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을 이유로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이에 우리부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며,**
 - 귀 협회에서도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공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주무관

조윤서

행정사무관

김주홍

근로기준정책 전결 2024. 1. 9.

과장

박종환

협조자

시행 근로기준정책과-111

(2024. 1. 10.)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548

팩스번호 044-202-8071

/ jyonsoe@korea.kr

/ 비공개(5)